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용어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, 물품의 가격결정에 관해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며, 삭제된 조항을 인용한 부분을 정비하여 물품관리에 적절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게 정비(안 제9조)
○ 물품 가격결정에 관해 누락된 조항 반영(안 제14조)
○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(안 제17조제4항)
○ 삭제된 조항을 인용한 부분 정비(안 제24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8. 8.23.~2018. 9.11.)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 - 44244(2018. 8.10.)〕
○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〔기획감사실 - 5993(2018. 8.10.)〕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에 사용하는 있는 용어를 변경하고 불용품의 매각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사항 등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우리군의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